

식약처, 수의사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교육 강화

-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해 동물병원 특화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대한수의사회와 협력하여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 사용과 철저한 취급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동물병원과 수의사가 증가하면서 동물 진료현장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취급부터 보관·안전사용까지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26.4월)하고, 수의사 면허 연수교육에 참여하는 등 동물 진료현장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강화를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마약류 취급관리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홍보 포스터*를 공동 제작·배포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 포스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내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

이외에도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동물 진료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무 중심으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및 취급 시 유의사항 ▲마약류 관련 법령 및 안전관리 제도 ▲동물 사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군부대 내 동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취급 시 주의사항에 관한 교육 동영상도 별도 제작하여 맞춤형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9월 15일, 19일 및 11월 8일에는 수의사 학술대회에 직접 찾아가 현장감 높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10월 15일에는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현장교육: (9.15) 전북수의사회 연수교육, (9.19.) 서울수의임상컨퍼런스, (11.8.) 경기 북부수의컨퍼런스

** 온라인 교육: (10.15.) 온라인 교육센터(www.nims.or.kr)

- 교육 일정, 신청 방법 등 세부사항은 온라인 교육센터(www.nims.or.kr)에 공지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수의사 및 동물병원 종사자의 교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진료현장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여 의료용 마약류의 철저한 관리와 오남용 위험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수의사 대상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 홍보 포스터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
--	---



The banner features the text: "#ADHD #살빼는 약 #나비약 #마약 #대마 #향정", "“마약 문제로 힘들 땐”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고통스럽고, 주위에 아무도 없다고 느껴질 때, 1342가 함께 할게요.", "당신의 일상 SOS 24시간 사이 통화내용 비밀보장!". It prominently displays the number 1342.

담당 부서	마약안전기획관 마약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은주 (043-719-2893)
		담당자	사무관	김지선 (043-719-2884)
담당 부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통합정보관리본부	책임자	본부장(직무대리)	장재혁 (02-2172-6834)
		담당자	팀 장	박주연 (02-2172-6740)

의료용 마약류를 사용하는 동물병원에서는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의료용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를 취급한다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취급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 케타민, 틸레타민-졸라제팜 등 의료용 마약류를 구입, 투약, 폐기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에 그 내역을 취급보고 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구분	중점관리대상(마약·프로포폴)	일반관리대상(중점 외 모든 마약류)
보고기한	취급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취급한 당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취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10일이 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 변경보고 : 보고기한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연계 보고 기능이 구축된 처방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면 편리하게 취급보고 가능
- 연계 기능의 적합성 평가 결과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알림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처방 소프트웨어(SW) 설치·이용 방법은 해당 업체에 문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진료기록부) 발행 시,
필수 정보를 기입합니다.**

- 병원 소재지, 병원 상호(명칭), 수의사 면허번호,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 동물의 소유자(관리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우선 보고) 또는 여권번호



마약류 관리 의무 사항을 준수합니다.

- 마약은 이중 잠금장치가 설치된 철제금고, 향정신성의약품은 잠금장치가 설치된 장소에 저장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취급자(마약류취급자가 지정한 종업원) 외의 사람을 출입시켜서는 안되며,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도난·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의료용 마약류의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비치하여 2년간 보존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연번	일시	점검내용	점검인원	점검인원	점검인원	점검인원	점검인원

**⚠ 의료용 마약류 관리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취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및 취급보고 문의

www.nims.or.kr / 1670-6721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수의사회
Korean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